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가합10272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기윤도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디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조국환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8.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8.부터 2023. 8.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27,835,9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차량용 커튼 등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C는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D와 함께 원고를 경영하는 사람이며, 피고는 'E'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원고에게 차량용 커튼 원단을 납품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9. 4. 10.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171,600,000원을 2019. 8. 30.까지 지급하고, 소외 C가 이를 연대보증한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익이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갑 제9호증).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9. 4.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제휴 협약서(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 협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갑 제10호증).

업무제휴 협약서

주식회사 A(이하 '갑'이라 한다)과 E(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업무제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업무제휴의 범위)

1. '갑'과 '을'은 각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호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

1) 주식회사 A의 자동차용 커튼(이하 '카커텐'이라 한다)의 생산 및 판매에 필요한 기술 및 저작권은 '을'과 공유한다.

4. '을'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노하우 및 기술, 생산된 제품을 '갑'과 협의 없이 판매를 불허하며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 발생하는 책임 및 상호 체결한 보상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

1. ‘갑’과 ‘을’은 협약 기간 중은 물론 협약 관계 종료 후에도 업무제휴를 통해 취득한 업무상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며 손해배상하여야 한다(별도의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따른다).

제8조(특별조항)

1. 생산원가 공개로 인한 ‘갑’과 ‘을’의 협의 없는 반출 및 협의 하지 않은 업체로의 별도 판매 및 납품과 생산 기술 유출로 인한 손해액은 각각 금 300,000,000원 및 밝혀진 매출액에 대한 100% 금액을 즉시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피고는 2019. 10. 24.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동산을 압류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73319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해당 법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는 물품대금은 103,943,840원에 한정되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미 합계 122,019,726원에 이르는 물품대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제12호증).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권원을 초과하여 추심한 것으로 인정된 18,075,886원(=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된 물품대금 122,019,726원 - 피고가 집행할 수 있는 물품대금 103,943,840원) 외에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일부 금액을 추가적으로 추심하였는바, 이로써 피고가 자신의 물품대금채권을 넘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추가적으로 추심해간 금원은 합계 27,835,97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27,835,979원을 추가적으로 추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추심한 27,835,97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업무제휴 협약 제2조 제4항에 위반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차량용 커튼 제작에 관한 기술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차량용 커튼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이를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업무제휴 협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27,835,979원을 추가적으로 추심해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27,835,979원을 추가로 추심함으로써 해당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7,835,97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봉제비 24,000,000원의 채권과 운송비 13,768,3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1) 자동채권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봉제비채권 24,000,000원, 운송비채권 13,768,300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상계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봉제비 및 운송비 채권의 상계적상일을 2020. 6. 1.로 보는 것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¹⁾, 위 시점을 상계적상일로 본다.

나아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3. 4. 18.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상계적상일인 2020. 6. 1.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27,835,979원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봉제비 및 운송비채권 합계 37,768,300원(= 봉제비채권 24,000,000원 + 운송비채권 13,768,30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모두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증인 F는 피고에게 원고의 금형을 사용하여 차량용 커튼 레일을 제작해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와의 거래 이전까지 차량용 커튼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커튼의 규격, 모양, 특성이 원고가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차량용 커튼의 규격, 모양, 특성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업무제휴 협약 제2조 제4항에 위반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차량용 커튼 제작에 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용하여 차량용 커튼을 제작하여 이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업무제휴 협약 제8조 제1항으로 '협의 하지 않은 업체로의 별도 판매 및 납품과 생산 기술 유출로 인한 손해액을 300,000,00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항에 근거하여 300,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여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업무제휴 협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동사업이 상호간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와 원고 사이의 거래규모(피고가 원고에게 커튼 원단을 납품하여 취득한 물품대금채권은 103,943,840원에 해당한다), 그 밖에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업무제휴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액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업무제휴 협약 제8조 제1항이 ‘협의 하지 않은 업체로의 별도 판매로 인한 손해액은 300,000,000원 및 밝혀진 매출액에 대한 100%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스스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여 300,000,000원만을 청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예정액은 80%로 감액하여 240,000,000원(= 300,000,000원 × 80%)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6.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3. 6.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8.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주채광, 판사 홍사빈, 판사 김현정

1) 제3회 변론조서 참조